
외국인투자 관련 관세정책 동향

[2022년 하반기]

2022. 12.

본 자료는 외국인투자자 및 납세자 등의 권익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해 22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중심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KOTRA 종합행정지원센터 투자종합상담실 관세청 파견관 (☎ 02-3497-1061)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 차

① 반도체 제조장비 등 분할 수입시 통관 규제 완화 정책	p.2
②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	p.3
③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허용 조치 연장	p.4
④ 보세공장 규제혁신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	p.5
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확대	p.6
⑥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확대 시행	p.7
⑦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 간편하게	p.8
⑧ 항공기 기내식 관련 규제개선으로 외국인 인권 향상 도움	p.9

1 반도체 제조장비 등 분할 수입시 통관 규제 완화 정책

- 반도체 제조장비 등 거대·과중량 등의 사유로 분할 수입하고 있는 대형장비가 두 개 국가 이상에서 들여올 때도 완제품 관세율 적용

- 기존에는 한 개 국가로부터 부분품이 분할 수입되는 경우에만 수리전 반출을 허용, 업계의 불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음

【현행 예시】 국내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인 A사는 B부품은 미국 소재 공장, C부품은 영국 소재 공장에서 각각 생산해 수입한 후 국내에서 반도체 대형 장비를 조립·생산하고 있는 경우, B부품과 C부품의 관세율이 각각 8%라고 한다면, A업체는 수리전 반출제도를 활용할 없어 해당 부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

-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반영해 두 개 이상의 여러 국가에서 각각의 부분품을 수입한 경우도 수입신고 수리전반출을 허용 ('22.9.16.)
- 거대·과중량 등의 이유로 분할 수입하고 있는 대형장비의 경우 부분품 별로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부분품이 수입 완료될 때 완제품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해 완제품 관세율을 적용해주는 수리전반출 제도 운용



②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 방안

- 구매일이 다르다면 입항일이 같더라도 합산과세하지 않고 별도 처리
-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을 위해 목록통관 수출을 34개 세관으로 확대

- 관세청은 아래와 같은 합산과세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소액면세제도를 악용하기 위한 의도적인 분할·면세 통관이 아님에도 구매물품의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합산과세하는 불합리한 현행 기준을 정비 (22.10.5.)

※ 특송물품의 소액물품 면세범위는 개인자가사용 목적의 미화 150불이하, 예외적으로 미국에서 발송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

【현행 예시】 국내구매자인 A씨가 1월1일 해외직구 쇼핑몰에서 비타민을 80달러에 구매하고 1월2일 다른 쇼핑몰에서 바지 등 의류를 100달러에 구매하였는데, 공교롭게 두 물품이 배송된 입항일이 1월7일에 같이 들어오게 되어 합계 180달러로 면세범위인 150달러가 초과되어 관세가 부과됨

* 만약 다른 날에 각각의 물건이 들어왔더라면 비타민 80달러, 바지 100달러의 물품으로 150달러 이하의 물품이기 때문에 면세가 적용되었을 것임

-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을 위해 물품 수출시 인천·평택·김포 등 3개 공항만 세관에서만 목록통관 수출*이 가능했던 것을 전국 34개 세관으로 확대

*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200만원 (FOB 기준) 이하 물품은 특송업체의 통관 목록 제출이나 우편물 목록 제출로 정식 수출신고를 대신할 수 있음

-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과 관련하여 오픈마켓에서 물품 구매시 '고객 가입정보'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의 일치 여부를 자동 검증

- 직구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에 '명의도용 신고 바로가기' 기능을 추가

③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허용 조치 연장

- 면세점 재고품 국내 판매 제도 연장
-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을 통한 관세 부담 경감

□ 코로나19 발생 이후 미판매 재고 급증 등 침체된 면세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재고 면세품의 수입통관 후 국내판매 허용'* 조치를 ('20.4월~)를 2023년 상반기 까지 연장 ('22.12.1.)

* 과세가 보류된 상태의 외국 물품인 '재고 면세품'을 수입신고(관세 등 납부) 후 국내에 판매

□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적용 지침*을 신규 제정(12.1.) 시행함으로써 면세업체가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을 활용하여 재고품 수입통관 시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

*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신청물품에 대한 동일성 확인 방법의 명확화 및 표준 신고서식 신설 등

□ 지난 9월 14일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세계 경기 부진, 주요 경쟁국의 적극적인 면세산업 지원 조치, 코로나19 상황 등 국내 면세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행

□ 이번 두가지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면세점의 미판매 재고 부담 경감 및 재고품 국내판매(수입통관) 시 관세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혜택으로 국내 판매가격 인하 및 업체의 매출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4 보세공장 규제혁신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

- 보세공장 제도 활용 중인 국가첨단산업의 세계시장 경쟁력 확보
- 보세공장 특허에서부터 물품 반입·반출, 제조·가공 등 절차 규제 완화

* 보세공장 제도: 수입신고 없이(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과세보류의 상태) 외국원재료를 국내 공장에 반입하여 제조·가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자율관리보세공장 운영 기업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보세공장 특허에서부터 물품 반입·반출, 제조·가공 등 보세공장 제도 전체 과정의 규제를 완화('22.11.25.)

[자율관리보세공장 특례 강화 내용]

내용	기존	개선
① 반입물품 제한 대폭 완화	<포지티브 방식 규제> 물품 11종만 반입 허용	<네거티브 방식 전환> 특허목적에 부합하는 모든 물품 반입 가능
② 보세공장⇔연구개발센터 물품 반출입 지원	정식 수입통관 후 반출 가능	사전 포괄허가로 반출 가능
③ 동일법인 사업장 간 화물운송 간소화 특례	동일법인이 운영하는 보세 공장간 보세운송 절차 생략	동일법인이 운영하는 자유 무역지역 사업장까지 특례 확대
④ 견본품 해외수출시 보세운송 절차 생략	견본품도 보세운송하여 수출	무상으로 수출하는 1만불 이하 견본품은 절차 생략

- 아울러 단일보세공장 특허요건 완화, 반입 즉시 사용 가능한 품목 확대, 보세공장 밖 일시장치 가능 물품 확대 등 보세공장 제도의 규제를 적극 개선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수출 활성화 여건 마련

5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확대

- 여행자 국내입국시 면세 한도를 800달러로 상향 조정
- 별도 면세한도인 술은 2병 2리터로 상향 조정

□ 2022년 9월 5일부로 여행자 국내 입국시 휴대품 면세한도를 기존 600 달러에서 800 달러로 상향 조정

* 국내 면세한도 연혁

1988년 400 달러 → 2014년 600 달러 → 2022년 800 달러

* 주변 국가 면세한도

일본 약 1,821 달러, 중국 약 775 달러

□ 별도 면세한도가 적용 중인 술은 기존 한병 1리터에서 두병 2리터로 상향하되, 면세한도 금액은 400달러 이하로 종전과 같으며, 담배와 향수는 각각 1보루와 60ml로 기존과 동일함

□ 이번 면세한도 상향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업계 경영 악화 및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한 것임

□ (기타사항)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 용품의 종류에 '스포츠용 보조 기구'*를 추가하여 면세대상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를 개선**

* (예시) 시각장애인 축구공, 시각장애인 스포츠용 고글 등

** (현행) 장애자 → (개정) 장애인

6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확대 시행

-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등 난방비 경감
- 고등어·명태 (장바구니 물가 안정) 등 10개 품목 대상

- 고유가·고환율 지속으로 서민층 난방비 부담과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조치가 시급한 상황
- 정부는 서민난방·수송비용 부담 완화, 장바구니 물가 안정 및 식품원료 수급 불안정을 해소를 위해 아래 10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확대 시행('22.11.10.)

< 할당관세 확대시행 품목 (지원효과 총 4,820억원) >

품명	지원방식	세율(%)		지원기간	지원효과 (억원)
		현행	변경		
서민난방비 부담완화	LNG	할0	0	~'23.3.31 (동절기)	3,718
	LPG				85
	원유 (LPG 제조용)	할2			505
장바구니 물가안정	고등어	10	0	~'22.12.31	19
	명태	22	10	~'23.2.28	71
	바나나·망고· 파인애플	30	0	~'22.12.31	157
식품원료 수급안정	계란·계란가공 품	할0	0	~'23.6.30	246
	옥수수 (가공용)	3		~'22.12.31	18

- 서민층의 동절기 난방비용 부담 완화 및 수요가 많은 대중성 어종, 수입 규모가 큰 바나나 등 열대과일에 대한 관세인하로 먹거리 부담을 경감

7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 간편하게

- '22.12.1. 한국-이스라엘, 한국-캄보디아 자유무역 협정 발효
-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및 간이인증' 신청 ('22.11.7.)

- 원산지인증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품의 원산지를 한국 산으로 증명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증명서 발급권한 및 세관·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 증명서 신속 발급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함
- 관세청은 사전에 인증수출자 심사가 완료된 기업에 대해서는 12월 1일부터 즉시 인증수출자로 지정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두 협정의 혜택을 즉각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며,
- 아울러 캄보디아는 이미 우리나라와 한국-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라는 다자간 무역협정이 발효 중임을 고려해, 원산지 결정기준이 완화되 품목에 대해 인증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운영
 - * (기존) 최대 14종의 원산지 증빙서류 → (간이) 협약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서류 등 3종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수출입기업센터로 문의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연락처>

세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169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73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65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94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975-8195
평택직할세관	통관총괄과	031-8054-7032

8 항공기 기내식 관련 규제개선으로 외국인 인권 향상 도움

○ 국제공항 출국대기실 내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기내식 제공 조치

□ 관세청은 국제공항 내 '법무부 출국대기실'에 대기 중인 '송환 대상 외국인'에게도 항공기 기내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혁신안을 시행('22.10.6.)

* 항공기내 소비되는 '항공기용품'으로 취급돼 '사용(소비)'의 영역이 엄격히 제한됨(원칙적으로 국내소비 불가)

□ 그동안 출국을 앞둔 '송환대상 외국인'이 머무는 공항(보안구역) 내 출국대기실의 특수성과 종교(또는 관습)적 사유의 외국인별로 다양한 식문화로 인해, '송환대상 외국인'에게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는 어려움*이 있었음

* 공항(보안구역) 내 출국대기실까지의 복잡한 공급절차, 할랄음식 등 다양한 종교식 제공업체 부족 등

□ 이에, 관세청은 법무부의 건의를 받아 국제공항 출국대기실 내 '송환대상 외국인'에게 항공기용 기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지 검토 했고

○ 관련 법령 검토, '민·관합동 규제혁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내식의 사용 영역을 출국대기실 내 송환대상 외국인에게 까지 확대 허용

□ 이번 조치로 연간 약 4만4천명('19년 기준)의 출국대기실 내 '송환대상 외국인'의 인권이 보다 향상 되고,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작 성 자

- 투자종합상담실 관세청 파견관 이명찬

KOTRA자료 22-133

외국인투자 관련 관세정책 동향 (2022년 하반기)

2022년 하반기

발행인		유정열
발행처		KOTRA
발행일		2022년 12월
주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화		02-1600-7119(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
문의처		투자종합상담실 (02-3497-1061)
I S B N		979-11-402-0543-1 (95320)



Copyright © 2022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